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9 호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4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44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병역명문가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 정의 중 인용조문 수정 (제2조제1호)
- 나. “예우대상자” 정의 중 주소지 제한 조항 정비 (제2조제2호)
- 다. 주소지 관련 내용 정비 (제5조제2항)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09월 02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생활안전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안전관리과(생활안전팀)
- ▷ 전 화 : 032)760-7823(FAX 032)760-7809]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에 따라 지방병무지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u>제18조</u> 에 따라 지방병무지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 ----- ----- ----- <u>제21조</u> ----- ----- -----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우대) ① (생략)	제5조(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u>주소가 기재된 신분증</u> 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② ----- ----- ----- <u>신분증</u> ----- -----. ----- ----- -----.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주민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